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8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소병훈·윤종군·박용갑

한민수 · 노종면 · 이재관

권칠승 • 전혐희 • 이병진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·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자신의 권리·욕구·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·활용하기가 어려움.

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 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,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, 건강, 교육,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 리, 운용,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4(재산관리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달장애인이 주거, 건강, 교육, 휴식 등 일 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소유한 재산 의 관리, 운용,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"재산관리 지원서비 스"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 - ③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절차,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, 계약 기재사항, 재산 관리·운용의 범위와 방법,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수 있다.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

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조의4(재산관리 지원) ① 국
	가는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
	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달장애
	인이 주거, 건강, 교육, 휴식
	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
	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
	소유한 재산의 관리, 운용, 지
	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
	"재산관리 지원서비스"라 한
	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	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
	체적인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
	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
	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
	<u>다.</u>
	③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
	공 절차, 지원서비스의 대상이
	되는 재산의 범위, 계약 기재
	사항, 재산 관리 운용의 범위
	와 방법, 비용부담 등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
	<u> 령으로 정한다.</u>
제41조(위임·위탁) ① ~ ⑥ (생 ==:)	제41조(위임·위탁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
<신 설>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연금 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 공단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연금 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.